

日帝 強占 初期의 奎章閣 圖書 整理 事業

金 泰 雄*

- 一. 머리 말
- 二. 圖書 移管과 書架 配置
- 三. 圖書 分類와 目錄 作成

- 四. 圖書 解題와 年代記 拔萃
- 五. 맺 음 말

一. 머리 말

日帝는 1910년 8월 조선을 강점하면서 대한제국 황실소유의 규장각 도서와 여타 도서를 강제로 점유한 뒤 도서정리작업을 벌였다. 그것은 '舊慣制度調査事業'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담당 부서는 取調局, 參事官分室과 中樞院으로 이어지는 총독부 관서와 자문기구였다. 아울러 이 작업은 1910년대 전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¹⁾

먼저 일제는 대한제국 황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규장각 도서를 비롯하여 여타 기관의 도서와 기록들을 대거 취조국으로 이관시켜 관리하였다. 그외 여타 도서를 수집하거나 새로 구입하였다. 그리고 이들 도서들을 분류하고 목록대장과 카드를 작성하였다. 끝으로 일제는 구관제도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解題 作業을 진행하면서 《朝鮮王朝實錄》 등의 연대기 자료를 발췌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문헌 조사 측면에서 구관제도조사사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1920년대 식민지 문화정책의 기초를 재조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민족말살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규장각 도서정리작업은 일제의 지배정책에 부합하면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그 작업 방식과 내용 역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작업 과정에서 조선 재래의 도서체계를 왜곡시키고 도서자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방향으로 나아간 측면도 적지 않았다. 가령 도서자료를 세심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分合綴한다든가 도서명을 임의로 정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며 심지어는 상당한 도서들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일들이 빈번하였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일제의 도서정리작업 방식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제한된 시간과 지면으로 말미암아 규장각 도서 전반에 대한 조사에

*필자: 서울대 강사

1) 1910년대 前半 '구관제도조사사업'에 대한 연구는 줄고, 1993 <1910년대 前半 取調局·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奎章閣》16 참조.

미치지 못하고 대한제국 정부와 일제가 남겨 놓은 目錄類, 解題集과 圖書關係 書類 綴 등을 분석하면서 도서 이관과 분류, 해제와 발췌작업을 해명하는데 국한하고 말았다.²⁾ 따라서 도서 수집, 관리와 형태 문제 등은 도서전반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별도로 다루려 한다.

二. 圖書 移管과 書架 配置

일제는 1910년 8월 조선 강점 직전 弘文館, 奎章閣, 集玉齋, 侍講院, 北韓山 行宮과 江華 鼎足山의 史庫 등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를 宮內府에 이관하였다. 곧 이어 1911년 2월 궁내부 소장도서를 조선총독부의 도서로 점유하기로 결정한 뒤, 1911년 6월에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이를 강제 인수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대한제국 정부의 기록류와 통감부 기록류, 그리고 太白山 奉化史庫, 五臺山 平昌史庫, 赤裳山 茂朱史庫의 도서들도 점유하였다. 아울러 璿源閣에 보관되어 있었던 《承政院日記》와 《日省錄》 등도 점유하였다.

그런데 이들 도서 중 弘文館, 北韓山 行宮의 도서 등은 대한제국 宮內府 圖書課에서 이관받아 집중 관리하고 있었다.³⁾ 이와 관련하여 원래 소장별로 목록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朝版’, ‘唐版’으로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우선 분류방식을 보면 《四庫全書》의 분류방식을 따랐다.⁴⁾

그리고 배치도 여기에 부합되게 배열 정리하였다. 表 1)은 제실도서의 分類方式

- 2) 目錄類는 55부, 解題集은 3부, 索引集은 3부, 圖書關係書類綴은 20부로 총 61부이다. 이 중 대다수는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의 일부는 臧書閣 등에 소장되어 있다.
- 3) 宮內府 圖書課는 을회 2년(1908) 9월 23일에 마련된 규장각분과 규정의 관련 조항 제3조를 보면 圖書 保管과 出納, 整理와 分類 그리고 圖書原版保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宮內府 大臣官房調査課, 1910 《宮內府規例》, p. 57).
- 4) 이러한 분류는 규장각 설치 이래 전통적인 방식이라 하겠다. 《四庫全書》의 總目을 보면 다음과 같다.

部別	類 別
經部	易, 書, 詩, 禮, 春秋, 孝經, 五經總義, 四書, 樂, 小學
史部	正史, 編年, 記事本末, 別史, 雜史, 詔令奏議, 傳記, 史鈔, 載記, 時令, 地理, 職官, 政書, 目錄, 史評
子部	儒家, 兵家, 法家, 農家, 醫家, 天文算術, 術數, 藝術, 譜錄, 雜家, 類書, 小說家, 釋家, 道家
集部	楚辭, 別集, 總集, 詩文評, 詞曲

表 1) 帝室圖書의 分類와 書架 配置

部別	朝版		唐版		備考
	類	書架	類	書架	
經部	易書 詩 禮 春秋 孝經 四書 小學	1-5 3 4 5-6 7-8 9 10-12 12	易書 詩 禮 春秋 孝經 五經總義 四書 樂 小學	13-15 15 16 17-20 21-22 22 23-29 30-31 32 32-36	
史部	正史 編年 記事本末 別史 雜史 詔令奏議 傳記 政書 史評 目錄	1-4 4-9 9 9-11 11-12 12-13 14-16 17-22 22 22	正史 編年 記事本末 別史 雜史 詔令奏議 傳記 鈔史 載記 時令 地理 職官 政書 史評 目錄	23-30 31-33 33-35 36-37 38-40 41-42 41-43 43 45 45 45-49 49 50-56 57 57-58	
子部	儒家 兵家 法家 術數 藝術 譜錄 雜家 類書 小說家 釋家 道家	1-4 5 6-7 7-8 8 8 8 9-10 10 10 10	儒家 兵家 法家 農家 醫家 天文算法 術數 藝術 譜錄 雜家 類書 小說家 釋家 道家	11-13 13-15 15 15-16 16-17 17-18 19-20 20-21 21 22-26 27-54 55-57 58 58	
集部	楚辭 別集 總集	1 1-24 25-28	別集 總集 詩文評類及 詞曲 雜部	29-48 49-57 58-59 60-62	

출전: 宮內府 奎章閣 圖書課 編, 1909 《帝室圖書目錄》

과 書架 配置 現況을 보여준다.⁵⁾

여기서 도서 전체가 크게 朝版과 唐版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시 부별로 經部, 史部, 子部, 集部로 구분되어 서고에 배치되어 있음이 잘 드러난다. 그리고 또다시 類別로 구분되어 서가에 배열되었음도 그러하다.⁶⁾

뿐만 아니라 동종의 도서는 表 2)와 같이 연이어서 배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열은 규장각, 春坊(侍講院), 集玉齋, 北韓山行宮 도서를 모두 이관하여 四庫全書의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가 배치와 도서 배열은 1911년 9월 도서이관과 관련하여 크게 변경되었다. 우선 신축서고를 本庫라 칭하고 여기에 조판도서를 배열하였다. 본고 아래 계단에는 조선판 서적을, 계단 아래에는 實錄, 系譜日記類를 整置하였다.⁷⁾

아울러 東南北의 세 書庫에는 중국 서적을 정치하였다. 그리고 西庫에는 儀軌類를 정치하였다. 끝으로 散佚缺損된 조선 서적과 중국 서적 중 여러 부 또는 수십부인 것을 추가로 집합, 보존하기 위해 別庫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崔조국 청사 내 서고는 表 3)과 같다.⁸⁾

다시 이들 도서들은 서고내에서 經, 史, 子, 集別로 배치되었다.⁹⁾ 그리고 여기에 모자랄 때 동일 가에서 別架, 新架를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朝板의 경우, 本庫에

表 2) 《帝室圖書目錄》의 記載 內容例

全	全	全	全	全	史 記	全	全	全	全	全	全	全	謨 訓 輯 要	書 名
					三								三	冊 數
														欠
					一 〇								一 〇	架

출전: 宮內府 奎章閣 圖書課 編, 1909 《帝室圖書目錄》

- 5) 朝版의 경우, 총부수는 2,123부에 이른다(宮內府 奎章閣 圖書課 編, 1909 《帝室圖書目錄》).
- 6) 이 시기 궁내부 도서과의 서고배치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일제가 1912년 서고를 재배치하면서 '朝鮮建書庫'를 東西南北의 四庫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부별로 서고에 배치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조선본을 모아 두었던 西庫의 경우, 樓上庫에는 北一櫥, 南一架와 樓下庫에는 北一架, 南一架를 각각 배치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圖書關係書類綴》).
- 7) 《圖書關係書類綴》(奎 26742).
- 8) 新庫에 대해서는 1911년 6월 '서적처리 방침에 관한 건'이 결정된 뒤 이후 추가로 설치된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1911년 9월 崔조국 청사가 이전된 뒤, 정리가 완료된 서적과 실록만 이전하고 기타 일기, 의궤류 등 책수가 많은 것과 餘部가 10부인 것, 板本, 鑄字, 其他 雜品은 서고내에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圖書關係書類綴》).
- 9) 《朝板部別目錄》의 書架를 보면 經架, 史架, 子架, 集架로 분류, 배치되었다.

表 3) 取調局 書庫 現況¹⁰⁾

書庫	部數	冊數
本庫	3,885	17,850
南北庫	7,822	30,548
新庫	1,888	13,144
合計	13,995	67,016
支那版	2,768	54,039
處入其他	1,419	29,564
總計	31,837	617,051

출전: 《朝板部別目錄》(奎 26742)

表 4) 1913년 奎章閣 朝板 圖書 現況

部別	經部	史部	子部	集部	合計
數量					
部數	390	1,598	785	1,112	3,885
冊數	1,903	6,946	2,687	613	12,151
缺數	33	265	66	1	365
架數	59-167	1-42	1-16	1-23	

출전: 《朝板部別目錄》(奎 26742)

表 5) 1913년 奎章閣 唐板 圖書 現況

部別	經部	史部	子部	集部	合計
數量					
部數	1,962	2,729	2,235	871	7,797
冊數	11,414	12,839	6,584	8,411	39,248
缺數	586	1,114	669	805	3,174
架數	南架 北架	南架 北架	北架	北架	

출전: 《唐板部別目錄》(奎 26754)

비고: 南北庫 외에 本庫 등에도 일부 소장되어 있으나 수량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아 제외시킴

이런 방식에 따라 배치되었다. 정리 현황을 보면 表 4)와 같다.

唐板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들 도서는 조판과 달리 南北庫에 배치되었다. 그

10) 이들 서고의 도서목록은 작성된 듯한다. 일례로 《圖書缺本調及整理簿》(奎 26755) 속에 '南北兩庫 圖書臺帳'이라는 제목표지가 삽입되어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현황은 表 5)와 같다.

서고 배치와 서가 배열은 1912년 4월 취조국이 폐지되고 참서관분실이 도서 정리를 담당함에 따라 또한번 크게 변경되었다. 그것은 종래 대한제국 시기의 서고배치와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表 6)과 表 7)은 1914년 10월 26일과 1915년 12월말

表 6) 1914년 10월 參事官分室 書庫 現況

種別	部數	冊數	備考
第壹庫	4,137*	15,437	
第貳庫	6,835*	22,848	
第三庫	2,467*	18,041	
第四庫(階上)	341	9,939	
第四庫(階下)	2,747	55,181	
第五庫(儀軌)	1,540	12,832	
合計	18,067	124,278	
第八庫(戶籍)		194	
活字		21장	
第五庫(板額)			
第七庫(板數)			

출전: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表 7) 1915년 12월 參事官分室 書庫 現況

書 庫	板本		支那本		朝鮮本	
	部數	冊數	部數	冊數	部數	冊數
第參庫	2,467*	18,041				
第四庫	4,014	63,886				
第一庫					4,137*	15,437
第二庫					6,834*	22,848
第四庫					70	9,721
第五庫					849	1,901
第六庫					714	1,149
別 庫					376	19,176
計	6,041	81,927			12,980	70,232
總 計	部數 19,141 冊數 152,159					

출전: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현재 각각 서고배치와 도서배열의 현황을 보여준다.

이 기간에도 서고상에 많은 변동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表 7)을 통해서서는 조선본과 중국본(‘支那本’: 일제의 命名, 필자주)을 구별할 수가 없다. 다만 表 6) *의 숫자와 表 7)의 그것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壹庫와 第貳庫가 조선본이고 第三庫가 중국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관 과정과 서고 배치를 통해서 이 시기에 이관작업이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고 배치 역시 전면적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서고 편성상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후술하는 바대로 圖書分類와 目錄作成, 圖書番號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圖 1)은 참고로 참서관분실의 서고 배치와 서가 배열 현황을 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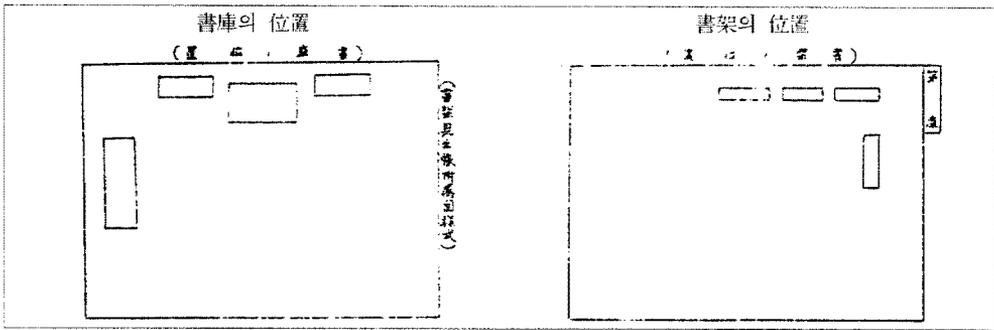


圖 1.

출전: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三. 圖書 分類와 目錄 作成

取調局은 1911년 8월 규장각 등 여러 도서의 이관을 앞두고, 이들 도서들을 四庫全書의 분류방식에 따라 經史子集의 4部로 대별하였다.¹¹⁾ 그러나 세부분류는 결정하지 못한 채 이듬해로 넘겼다.

1912년 3월 취조국은 분류방식을 확정하였다. 우선 조선본과 지나본의 2종으로 나누고 각각 경사자집의 4부로 대별하였다. 이 때 ‘朝鮮板’과 ‘支那板’은 각각 ‘朝鮮本’과 ‘支那本’으로 변경하여 지칭하였다. 그러나 기존 명칭은 1년 뒤까지 사용되었다.¹²⁾

11) 《圖書關係書類》.

그리고 이들 도서를 表 8)과 같이 細別하였다.

表 8) 取調局의 圖書分類 方式

部別	類 別
經部	四書五經, 字彙
史部	系譜記錄, 歷史雜史, 政治法律, 傳記雜記, 地理, 年表目錄
子部	儒道佛, 兵農醫, 天文算, 類書, 叢書, 雜書, 藝術
集部	別集, 總集, 修辭

출전: 《圖書關係書類綴》(奎 26764)

이러한 분류방식은 四庫全書 분류법에 기초한 《奎章總目》의 분류방식을 전면 폐기하고 일제가 독자적으로 분류법을 만들어 재분류한 것으로 보인다.¹³⁾ 가령 조판목록이나 당판목록이든 경서류에는 《大學》, 《中庸》, 《孟子》, 《論語》 등 四書가 먼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입각하여 소장도서를 분류하여 《書籍目錄臺帳》을 작성하였다.¹⁴⁾

이 목록대장에는 총 3,100여 부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 기재 도서들에는 전술한 바대로 弘文館, 侍講院, 集玉齋, 江華史庫, 春坊, 新庫, 宮內府 記錄課 뿐만아니라 총독부 소장도서도 포함되어 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모두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부수면에서도 이관도서의 수량과 크게 차이가 날 뿐만아니라 (舊)圖書課에 남아 있는 도서가 완전히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⁶⁾

일례로 《明谷集》(崔錫鼎 著)의 경우, 총 6부인데 파악된 도서는 帝室所藏의 도서만이 파악된다. 나머지 5부는 시강원과 여타 기관 소장의 도서인데 이들 도서는 전혀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¹⁷⁾

이와 같이 《書籍目錄臺帳》은 매우 불완전할 뿐만아니라 체계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목록은 ①書名 ②部數 ③冊數 ④缺數 ⑤著者 ⑥子 ⑦號 ⑧時

12) 이러한 命名의 변경은 중국인 저서라 하더라도 조선에서 출간하거나 필사한 경우, 朝鮮本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령 四書三經의 경우, 조선에서 출간된 책이면 조선본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정 즉시 변경하지 않고 1년 뒤에 가서야 변경·지칭하였다(《書籍目錄臺帳》(奎 26768)).

13) 《奎章總目》(奎 4461)에 관해서는 慎鏞廈, 1981 <奎章總目 解題>《奎章閣》4 참조.

14) 《書籍目錄臺帳》(奎 26768).

15) 상단에 원소장처가 적색으로 부기되어 있어 도서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이들 도서들을 이 때 모두 모아 일괄적으로 정리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書籍目錄臺帳》).

16) 《圖書關係書類綴》(奎 26764). 가령 四書三經의 경우, 조선에서 출간될 책이면 조선본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정 즉시 변경하지 않고 1년 뒤에 가서야 변경·지칭하였다(《書籍目錄臺帳》(奎 26768)).

17)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明谷集》중 도서번호가 奎 5058인 경우, 侍講院의 印이, 奎 1618인 경우, 帝室圖書之章의 印이, 끝으로 奎 5902인 경우는 侍講院의 印이 찍혀 있다(서울大學校 圖書館, 1981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p.1568).

代 ⑨板種 ⑩架數순으로 작성되었다.¹⁸⁾

아울러 도서 표지에 모두 番號紙를 붙이고 內紙에는 藏書印을 찍으려 했다. 表 9)은 애초에 붙이려 했던 번호지 양식이다.

表 9) 圖書 番號紙 樣式

經	番號	
書名		
著者		
板種	部數	
舊藏	冊數	

출전: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1912년 4월 참서관분실이 규장각 도서를 관리하면서 도서분류방식은 다시 四庫全書의 분류방식으로 환원되었다. 따라서 圖書部別目錄 역시 대폭 수정되었다.¹⁹⁾

그러나 참서관분실은 소장 도서의 배열을 조선도서와 중국도서로 구분하고 부별·유별로 분류하였을 뿐, 이에 따른 도서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채 書架에만 배열도서의 시작과 끝번호를 기입하였다. 表 10)은 이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表 10) 書庫·書架의 圖書 排列

庫名	書架番號	圖書番號起終	備考
第一	第一	1—50	朝50號 80冊 중 3冊은 第二架
	第二	50—75	朝50號 80冊 중 50冊은 第一架
第二	第一	76—90	78. 80은 貴重本(第四庫 第二架)
:	:	:	
:	:	:	

출전: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그리고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도서 배열이 재차 바뀌었다. 가령 表 1)의 四書五經類가 1架에서 59架로 바뀌었다. 그외 이런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이 기간에 도서가 취조국에서 참서관분실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서고 배치·서가 배열의 변경과 맞물려 일어난 데 따른 결과였다. 조선판의 경우, 表 11)과 같다.²⁰⁾

18) 원래는 ①書名 ②部數 ③冊數 ④著者名 ⑤字號 ⑥板種 ⑦著者年代 ⑧出版年代 ⑨舊所屬 ⑩原簿番號 ⑪架數 순으로 작성하려 했다. 여기에서 ⑩의 경우를 통해 이미 원부번호를 부여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작성방식은 1909년 궁내부도서과에서 인간한 《帝室圖書目錄》의 작성방식보다 훨씬 상세한 것으로 이후 도서목록작성의 표본이 되었다(《圖書關係書類綴》).

19) 《圖書臺帳》(奎 26781).

20) 서고와 서가의 구체적인 배속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참서관분실에서는 1914년 7월 이래 도서관 설치와 열람에 대비하여 도서 카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일본 관변학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었다.²¹⁾

우선 조선도서와 중국도서로 구별한 뒤 도서명의 머리글자를 따서 47音順(いろは歌順)으로 재배열하였다.²²⁾ 다음 이 순서대로 카드번호를 부여하였다. 1부마다 책이 여러인 경우, 다시 冊次에 소번호를 붙이고 따로 카드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내용을 기입했다. 카드기재 양식은 表 13)과 같다.

表 13) 카드기재양식

(圖書名)	(冊次)
(編著者名)	(一部冊數)
	(書架番號)
(圖書番號)	(카드通番號)

출전 :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이 때 카드는 2종으로 나누고 조선도서는 藍色, 중국도서는 黃色을 사용하였다. 그의 貴重本은 백지를 사용하였다. 카드번호에는 조선도서와 중국도서의 구별에 따라 '朝' 또는 '支'의 글자를 맨머리에 덧붙였다. 그 결과 카드대장양식은 表 14)와 같다.

아울러 번호지도 다시 마련하여 각 도서 표지에 붙였다. 표 15)는 번호지 양식이다.

그리고 도서색인부도 이러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다.²³⁾ 양식은 表 16)과 같다.

이러한 카드번호 작성은 1915년 말까지 진행되었다. 그런데 1916년에 도서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서번호가 폐지되고 카드번호가 도서번호로 대체되었다.²⁴⁾ 表 17)은 일례를 든 것이다.

여기서 종전의 도서번호가 폐지되고 카드번호가 도서번호로 바뀌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이러한 부여방식은 계속 견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

21) 1930년 이후 경성제국대학에 이관된 뒤에도 조선인들에게는 도서가 일체 열람되지 않고 오로지 동 대학 교수들에게만 열람되었다(慎鐸廈, 1981 <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研究>《奎章閣》5, p.78).

22) いろは歌는 47字의 가나를 한 字도 중복시키지 않고 사용하여 지은 노래로서, 일본 가나 47字의 기본 음순을 표기하고 있다.

23) 《朝鮮圖書索引簿》(규 26779), 1915.

24) 對替時期를 1916년으로 주장하는 것은 1915년에 작성된 《朝鮮圖書索引簿》와 1916년에 작성된 《朝鮮圖書臺帳》(奎 26716, 1916)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데 따른 결과이다. 그리고 아마도 일본관학자들이 도서 대출 등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いろは음순으로 전격적으로 바꾼 듯하다.

表 14) 카드대장양식

								番 카 드 號
								圖 書 名
								編 著 者 名
								冊 次
								部 門
								圖 書 番 號
								書 架 番 號
								備 考

출전: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表 15) 번호지 양식

(圖書番號)
(카드番號)
(書架番號)
朝鮮總督府

출전: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늘날 규장각 도서번호는 서명의 머리글자를 따서 일본의 47음순에 따라 부여된 셈이 된다.

아울러 대출의 편의를 위해 서고내 도서를 이러한 도서번호 순대로 재배열하였다.²⁵⁾ 그 결과 각 서고의 도서는 表 18)과 같이 정리되었다.

끝으로 1917년 中樞院 解題掛에서는 도서번호와 도서 배열의 이러한 원칙에 따라

25) 이런 원칙은 이미 1913년 7월경에 마련된 도서정리조항 중 제7조 '新番號에 의한 서가배열'에서 마련된 것이다. 다만 당시에는 신번호 부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듯하다(《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表 16) 圖書索引簿 樣式

									圖書名
									編著者名
									冊數
									板種
									部門
									圖書番號
									카드通番號
									備考

출전: 《朝鮮圖書索引簿》(奎 26779)

表 17) 圖書番號와 카드番號 變更 例

出典 圖書名	朝鮮圖書索引簿		朝鮮圖書臺帳 朝鮮圖書總目錄
	圖書番號	카드番號	圖書番號
白鹿洞規解	2714	7004	7004
西潭集	9037	5937	5937
西坡集	8981	6306	6306

비고: 《朝鮮圖書索引簿》(1915), 《朝鮮圖書臺帳》(1916), 《朝鮮圖書總目錄》(1917)

《朝鮮圖書總目錄》(奎 26778)을 작성함으로써 목록문제를 일단락지었다. 그리고 이 목록을, 해제를 위한 기초목록으로 활용하였다.²⁶⁾ 表 19)는 1912년 《書籍臺帳目錄》의 일부 내용이다. 그리고 表 20)은 《朝鮮圖書總目錄》의 일부 내용이다. 결국 經史子集 분류방식의 《書籍臺帳目錄》과 47표음 배열방식의 《朝鮮圖書總目錄》에서 기재

表 18) 1916년 朝鮮 圖書의 整理 現況

書庫	書架	號數	冊數	典據
第一庫	3의 1	1-2021	8,714	冊1
	3의 2	2022-4016	7,618	冊2
	3의 3	4017-5290	5,260	冊3
第二庫	4의 1	5291-7313	2,023	冊4
	4의 2	7314-8947	1,634	冊5
	4의 3	8948-10220	1,273	冊6
	4의 4	10221-12470		冊7
第四庫		12719-15035(冊8)		
第五庫		實錄, 瑤源 關聯 書籍, 戶籍, 儀軌		
第六庫				

출전: 《朝鮮圖書臺帳》(奎 26716, 총8책)

순서가 매우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대로 정리방식과 배열기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度支定例》의 경우를 들어 확인해 보자. 表 21)은 《탁지정례》의 도서번호를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1909년에는 1부 정도 정리되었던 《度支定例》를, 도서를 이관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일제는 1915년에 7부까지 정리하였으며 이 때 도서번호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곧이어 일제는 총11부를 정리한 뒤, 카드번호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로 1917년에는 17부를 최종 정리하면서 기존의 도서번호를 폐기하고 카드번호를 도서번호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제가 각 시기마다 최종 정리한 도서수량과 대조하면 더욱 확연하다. 끝으로 《탁지정례》의 도서번호가 1, 2번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서번호가 47음순에 따라 부여되는 1916년 이후 시점에 이러한 부여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다만 表 19)와 表 20)을 대조할 때, 《탁지정례》가 배열되어 있던 어느 서가가 먼저 정리되었고 다시 이들 정리 도서 중에서 《탁지정례》가 47음순에서 앞서 맨앞에 배치된 게 아닌가 추정된다.²⁷⁾

이와 같이 일제는 장기적인 분류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때 그때 작업량을 설정한 가운데 일부 서가만 분류 정리한 뒤 도서번호를 곧바로 부여하였다. 더군다나 도서부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적으로는 자기들 편의에 맞추기 위해 서명의 머

26) 《朝鮮圖書總目錄》의 내용을 보면 맨 상단에 '解濟'라고 刻印된 빨간 도장이 거의 찍혀 있다. 관련 내용은 4장을 참조.

27) 표 17)에서는 《度支定例》(タクシテイレイ)가 《國婚定例》(コクコンテイレイ) 보다 뒤에 기재되었으나 표 18)에서는 앞에 기재되어 있다. 47음순상 'ㅈ'음이 'ㄱ'음 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表 20) 《朝鮮圖書總目錄》의 記載 內容 一例

尙方定例	全	全	全	全	國語格定例	國語格定例	國語格定例	全	度支定例	物品目
					多 多 多	多 多 多	多 多 多		金 金 金	物品檢査調書
	=	=	=	=	=	=	=	=	=	圖書番號摘要
	一	一	九	八	七	六	五	四	二	(大正六年十月一日現在)

으로는 '舊慣制度調査事業' 과 朝鮮史의 編纂에 當아 있었던 것이다.

四. 圖書 解題와 年代記 拔萃

취조국은 1911년 6월 도서점유 직전에 이미 해제작업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³⁰⁾ 그것은 식민지 통치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일제는 목록 작업보다는 해제 작업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³¹⁾ 그리하여 1만부 이상의 도서를 1912년 말까지 계획하였다.³²⁾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해

30) 《圖書關係書類綴》.

31) 일제는 목록이 작성되는 대로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였다(《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6월 19일 취조국 문서철).

表 21) 《度支定例》 도서번호의 변화

出 典	圖書番號	最終整理 圖書部數
帝室圖書目錄(1909)	번호 미부여(1부)	2,123
書籍目錄臺帳(1912)	번호 미부여(4부)	3,100
圖書臺帳(1915)	1838~1844(7부)*	8,690
朝鮮圖書索引簿(1915)	1, 2, 71, 172, 183, 198, 1367, 1368, 2436, 2485, 9917*** (11부)	12,980**
朝鮮圖書總目錄(1917)	1, 2, 71, 172, 183, 198, 1856, 2022, 2367, 2368, 3513, 4206, 7879, 9917, 11436, 11485, 11957 (17부)	15,025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1921)	1, 2, 71, 172, 183, 198, 1856, 2022, 2367, 2368, 3513, 4206, 7879, 9917, 11436, 11485, 11957 (17부)	17,539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1981)	1, 172, 1856, 2022, 15336~15348, 15349(18부)	33,088

비고: *는 기존 도서번호

**는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1915)에 근거

***는 카드번호

1981년과 1921년의 목록을 대조하면, 13부가 분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양식은 表 22)와 같다.

表 22) 取調局의 圖書解題 樣式

書名	卷數	冊數	作者	字號	年代	板種	日本 紀元

출전: 《圖書關係書類》(奎 26764)

우선 ‘純粹’ 조선본을 선정하여 해제작업을 시작하였다. 1912년 현재 史部 360부, 子部 60부, 文集 120부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1913년 3월중 1,121종에 대한 해제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記述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집필자가 여러 사람이어서 통일성이 결여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참서관실은 1913년 7월부터 相任者를 1명으로 정하고 개정에 착수하였다. 당시 經部와 史部는

32) 이러한 계획은 당시 장서 수량과 비교할 때 조선 도서 전부를 해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기도 하다(《每日申報》 1911년 8월 11일).

鄭萬朝가, 子部는 千葉昌胤이, 集部는 鄭炳朝가 각각 담당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달고분을 임시로 淨書하여 일본어로 번역하는 한편 문체도 다시 손대어 윤편하였다. 그의 새로 구입하거나 등사한 책 중 누락되어 있는 도서를 해제하려 하였다. 드디어 1914년말에는 일부 원고를 조판하기도 하였다.³³⁾

그리고 이 작업은 1915년 4월 이후에는 中樞院으로 넘어가 계속되었다.³⁴⁾ 그 결과 1917년에는 조선도서 해제원고를 일단 완료하였다.³⁵⁾

이 작업은 전적으로 魚允迪과 鄭丙朝, 鄭萬朝 등 조선인 촉탁이 담당하였다. 여기에는 이미 활자본으로 인간된 원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해제원고가 작성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 도서는 가필, 윤편 등을 거쳐 1919년 3월에 인쇄 발간되었다.³⁶⁾ 그 현황을 보면 表 23)과 같다.

表 23) 1919년 圖書解題 現況

部別	經部	史部	子部	集部
解題部數	153	1,268	397	999
比率(%)	5.4	45	14	35

출전: 朝鮮總督府, 1919 《朝鮮圖書解題》

여기서 일제가 史部 圖書를 다른 부문보다 집중적으로 해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史部 圖書의 수량이 다른 부문보다 전체 도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다. 특히 《朝鮮王朝實錄》의 경우, 왕대별로 모두 해제를 완료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일제가 子部 圖書와 함께 史部 圖書를 집중적으로 해제하였음은 舊慣制度調查와 朝鮮史의 편찬과 밀접한 관련이 관련이 아닌가 한다. 이런 사실은 朝鮮史編修會의 事業概要總說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조선의 文化는 그 연원이 매우 오래되어 우수한 것이 적지 않고, 政治·經濟·文學·藝術·風俗·歌謠 등에서 각각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학술적으로 연구해 놓은 것이 없고, 수천년에 걸치는 문화변천의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史書를 찾아볼 수 없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데라우찌총독은 日·韓併合 이후 조선에 부임하면서 조선에 가장 적절한 施政을 베풀기 위하여, 먼저 取調局을 설치하여 舊慣制度

33)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34) 1915년 4월 30일 中樞院의 官制가 개정되면서 종래 참서관실이 담당했던 '舊慣 및 制度에 관한 調査'의 기능을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제 작업 역시 중추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官報》1915년 5월 1일(號外).

35) 《朝鮮圖書 解題原稿》(奎 26588).

36) 朝鮮總督府, 1919 《朝鮮圖書解題》.

를 조사하게 하고, 아울러 朝鮮史의 編纂을 계획하게 하였다.³⁷⁾

이와 같이 해제작업은 구관제도조사사업과 조선사의 편찬을 위한 기초작업이었다. 특히 1915년 이후에는 中樞院의 《朝鮮半島史》 편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실록 등 연대기 자료의 발췌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 작업도 조선인 촉탁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1913년 말까지 태조로부터 철종까지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과 《日省錄》 등을 열람하여 다음 사항을 뽑아 목록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1914년 1월부터는 이 사항과 그의 부가사항에 따라 본문을 발췌하기 시작하였다.³⁸⁾

1. 종전 日本과의 사이에 있어서 관계사항(琉球도 포함)
貿易에 관한 사항
2. 소위 野人과의 사이에 있어서 관계사항
무역에 관한 사항
3. 明清과의 사이에 있어서 관계사항
또는 元과의 사이에서 관련된 사항
무역에 관한 사항
4. 기타 諸 外國과의 사이에 있어서 관계사항
무역에 관한 사항
5. 疆域에 관한 사항
6. 教育에 관한 사항
7. 官制에 관한 사항
8. 法典에 관한 사항
大明律에 관한 사항
9. 奴婢에 관한 사항
아울러 分財에 관한 사항도 포함
10. 田宅에 관한 사항
아울러 分財에 관한 사항
11. 租稅에 관한 사항(조세의 신설과 폐지, 田稅의 세율과 징수, 三水米의 稅率과 徵收, 貢物의 稅率과 徵收, 雜稅의 세율과 징수, 大同米의 세율과 징수, 結錢의 세율과 징수, 鹽稅, 漁稅, 船稅의 세율과 징수, 軍布의 세율과 징수, 附加稅의 징수와 세율, 復戶, 給

37)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 1938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p.1.

38)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 復, 免稅, 免賦, 징수기관의 신설과 개폐)
12. 賦役に 관한 사항
 13. 田制에 관한 사항(量田, 量田尺, 土地의 種目, 土地의 收穫, 土地의 賣買, 折受賜牌, 隱結餘結, 관리의 첩잡, 結負, 賑饑, 給災)
 14. 還上와 賑給에 관한 사항
 15. 兵役에 관한 사항
 16. 貨幣에 관한 사항
 17. 裁判에 관한 사항
 18. 妻妾子女에 관한 사항
嫡庶의 구별
 19. 立後에 관한 사항
奉祀, 養子, 收養子, 孀養子孫
 20. 經費에 관한 사항(祿制, 貢人契, 宮中府中經費 등 일체 지출에 관한 사항)
 21. 地方制度에 관한 사항(鄉約, 作統, 面里)
 22. 契에 관한 사항(貢契, 京城地方에 관한 各種의 契)
 23. 墓地에 관한 사항(北忘山 포함)
 24. 堤堰과 湫에 관한 사항
 25. 吏胥에 관한 사항
 26. 佛敎, 耶蘇敎, 東學, 巫覡에 관한 사항
 27. 風俗에 관한 사항(冠婚喪制, 服制, 棺, 家屋異物 등을 戒제)
 28. 중요한 土木에 관한 사항(가령 용산으로부터 남대문 밖 開渠의 議, 城內 漑渠工事, 金堤碧滑堤 築造, 築城運河, 富平 堤堰의 類)
 29. 新經營事業(糖蜜, 糖猪, 段子織造)
 30. 官纂書에 관한 사항
鑄字에 관한 사항
 31. 魚鹽에 관한 사항
 32. 工業에 관한 사항
各中 匠人에 관한 사항
 33. 商業에 관한 사항
裸負商에 관한 사항
市場에 관한 건
 34. 農業에 관한 사항
 35. 禁養에 관한 사항

36. 物價에 관한 사항
37. 大赦에 관한 사항
38. 前項에 記載되지 않은 사항 중 重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가사항

1. 分財에 관한 사항(奴婢, 田宅, 井田에 관한 사항)
2. 風水說에 관한 사항
3. 吏讀에 관한 사항
4. 貨幣에 관한 사항
5. 法典에 관한 사항
6. 立後에 관한 사항
7. 冠婚喪制에 관한 사항
8. 墳墓에 관한 사항
9. 田制에 관한 사항
10. 稅制에 관한 사항
賦役に 관한 사항
11. 山政에 관한 사항
12. 地方制度에 관한 사항

그 결과 1920년대말과 1930년대초에 《朝鮮王朝實錄》과 《日省錄》 발췌물이 집중적으로 나왔다.³⁹⁾ 그런데 이러한 항목들은 구관제도조사사업의 항목과 부합된다. 다음은 이 시기 구관제도사업에서 계획한 사항이다.⁴⁰⁾

- ① 土地制度 ② 親族制度 ③ 面과 洞의 制度 ④ 宗教와 寺院의 制度 ⑤ 書房과 鄉校의 制度 ⑥ 兩班에 관한 制度 ⑦ 四色의 起源, 沿革과 政治上 社會相에 있어서 勢力關係 ⑧ 四禮制度 ⑨ 常民의 生活狀態 ⑩ 朝鮮에 있어서 救貧制度 ⑪ 朝鮮에서 행해진 重要法典의 翻譯 ⑫ 朝鮮에 있어서 農家經濟 ⑬ 朝鮮의 統治에 參考할 歐美各國의 屬領과 植民地의 制度 研究 ⑭ 舊法典調查局에 있어서 調査事業의 整理 ⑮ 地方制度 ⑯ 灌溉에 관한 舊慣과 制度 ⑰ 鴨綠江과 豆滿江에 관한 調査 ⑱ 朝鮮語辭典의 編纂

양자를 비교할 때, 연대기 발췌작업은 구관제도조사사업의 취지하에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구관제도조사사업이 더

39) 관련 발췌물은 서울大學校 圖書館 奎章閣 編, 1981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pp.173~175 참조.

40) 朝鮮總督府 中樞院, 1938 《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 pp.23~24.

욱 구체화되는 가운데 문헌조사의 필요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일제는 이러한 조사에 기반하여 1920년대 이른바 ‘文化政治’의 골격을 세우고 한국역사를 포함한 한국 문화전반에 대한 왜곡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역사 부문에서는 植民史觀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1920, 30년대 《朝鮮史》를 비롯한 각종 편찬자료와 조사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민족말살정책을 위한 기초자료였던 것이다.

요컨대 규장각 도서 정리사업은 일제의 이러한 식민통치정책의 출발선상에 놓여 있었다 하겠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재래조선의 도서체계가 일제의 이런 목표와 정책 속에서 파괴되고 왜곡되기에 이르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五. 맺음 말

역사연구에서 史料 批判은 불가결하다. 특히 內的 批判과 함께 外的 批判은 역사 연구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역사연구자는 사료 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료의 외적 형태 역시 비판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사료 형태는 그 眞僞 여부를 넘어서 사료의 原出處, 사료의 作成 主體, 作成 年代 그리고 類似 史料間의 관계 등을 알려준다. 따라서 史料를 編纂하거나 製冊할 경우, 원래의 사료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여야 한다. 특히 사료를 비롯한 도서자료를 보관 관리하는 史料保管所에서는, 이들 자료에 대한 과학적 이용과 비판적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분류, 제책과 편찬 등의 문제에 늘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규장각 도서의 형성과정은 일제의 식민지배정책과 맞물려 이런 기본요건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舊慣制度調查事業과 朝鮮史 編纂을 위한 기초사업에 근간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民族抹殺을 위한 支配政策 및 이데올로기의 수립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은 물론이다.

일제는 이러한 목적을 소기에 성취하기 위해 우선 解題作業과 年代記 拔萃作業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기 위해 선행작업으로서 도서 이관, 분류, 번호부여를 비롯한 도서정리작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장기간에 걸쳐 도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번호를 부여하기 보다는 그때 그때 해제 작업 등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래의 조선도서체계는 해체되고 형해화하였다.

결국 오늘날 규장각 도서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있는 셈이 된다. 물론 해방 이후

奎章閣에서는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하에 도서정리사업을 전개하여, 국학연구자와 일반 대중들에게 지대한 도움을 제공하였을 뿐만아니라 民族文化의 창달에 공헌하였음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도서자료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圖書 番號의 賦與方式, 圖書 名의 命名, 原出處의 확인, 圖書資料의 입수 경로와 分合綴 문제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서자료의 존재형태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복원해야 한다. 이는 단지 일제의 植民地 遺制를 청산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韓國文化의 바람직한 건설 방향을 제시하고 文化力量을 재고하는데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다.